

중고령 가구의 재무구조와 성인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

Analyzing Adult Children's Income Transfers to Parents According to Financial Structure

윤원아*

일리노이 주립대학 농업소비자 경제학과

Yoon, WonAh

Dep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bstract

Using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elderly parent's financial structu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adult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receiv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Generally, Korean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to have very low liquidity in their asset structure, as the average household holds over 90% of their assets in real estate. However, it seems that the parents' potential income based on their real estate assets is unimportant in determining children's transfer decisions. Rather, the parents' labor income is found to be a key factor in children's income transfer decisions.

Keywords : elderly 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 liquidity

I. 서론

최근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률 감소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노년기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사회 발전의 결과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이 약화되고, 노년기의 장기화, 그리고 선진국과 같은 공적/사적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노령층의 노후소득보장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으로 볼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생애주기상 소득이 점차 낮아지는 단계이며 외환위기 이후의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보편화되면서 근로소득 발생기간은 축소되는 반면,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법적 평균 정년연령은 57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53세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기대수명이 79.6세(남 76.15세, 여 82.88세)인 것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약 20~30여년 이상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노령 이자생활자의 이자수익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박덕배, 2005). 노

* Corresponding author: Yoon, WonAh
Tel: +1-217-898-9917, Fax: +1-502-995-0175
Email: yoonwonah@hotmail.com

인가구의 대부분이 자산의 90% 이상을 주택 등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자산의 불균형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나 연금 없이 금융자산으로부터 오는 이자소득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남상호, 권순현, 2008; 박덕배, 2005; 보건복지부, 2007; 정경희, 2007). 그러나 이런 고령자의 자산의 저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는 아직까지 그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주택가격의 불안과 국민정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고령층 노인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 이외에 대부분 자녀지원등의 사적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어왔다(김희삼, 2007; 성재민, 2006; 정의신, 2008).

세대간 사적이전은 특히 자본시장의 제약이 큰 사회적 환경을 가진 나라들에서 개별소비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성재민, 2006). 즉, 현재 자녀로 부터의 금전이전에 의존하면서 사후 주택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으로, 미래 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로 부터의 사적 소득이전은 현재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불균형적 재무구조(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에 의한 소득빈곤을 해소하고, 소비수준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의 노인부양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자녀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노인들은 퇴직이후의 여생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신동진, 2009).

본 연구는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 패널(KLoSA) 1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사적이전의 수여자(receiver)로서의 중고령 가구들이 제공자(donor)인 성인 자녀로부터 이전받은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 소득이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가계내 자산 및 소득구조의 현황을 개괄하고 특히 이들의 불균형적 자산구조가 어떻게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

쳤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첫째, 자녀로 부터의 사적소득이전을 실증분석함에 있어서 정기적 이전과 비정기적 이전을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로 소득을 이전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이전과, 일회성 용돈 혹은 예측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인 비정기적 이전은 그 의도와 성격에 있어서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전이 다뤄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자녀로 부터의 정기적 소득이전은 노후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이전인 비정기적 이전은 그 의도와 결정요인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이전에 대한 분석을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차이점을 비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빈곤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에 관련된 방안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노령기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의존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도 노령기 자산불균형의 문제와 연계시켜 본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자녀들의 사적이전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를 고찰함에 있어, 노인의 최저소득 부족액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대비 총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소득 이외에 보유 재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고려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김희삼, 2007).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타연령층과 달리 자산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소득이 낮아지는 노인가구의 경우 유동성에 초점에 맞춘 재정비율분석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미 여러 학자들을 통한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유우정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자녀로 부터 받은 사적이전에 대한 저유동적 자산구조의 영향을 분석해 본 새로운 실증적 연구로서 고령인구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목표점을 향한 한 가지 방안으로 개별 노인가구의 건전한 자산운용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1.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사적이전의 역할

김희삼(2007)은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자식의 노부모 가구에 대한 사적 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은 노인빈곤에 대한 일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적이전은 공적 사회안전망이 꾸준히 확대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정 비율로 존재되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경우 실질적인 주소득원의 측면을 볼 때 상당 부분을 사적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재민, 2006; 최성재, 김태성, 2002).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하여 2003년 사적이전 소득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성재민(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가구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을 했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6.9%로 급증하며,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그는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사적소득이전 현상은 골고루 발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에서는 2배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세대간 소득이전의 실태에 관한 한-미 양국간 비교를 위해 노동패널(KLIPS)의 4차부터 8차까지(2001년-2005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인자녀-부모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서 빈도와 액수를 살펴본 김희삼(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자녀가구의 경우 두 가구 중 한가구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소득이전을 받은 성인가구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로써 세대간 소득이전은 성인자녀가구에서 노부모가구 쪽으로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패널데이터인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 액수 또한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모가구의 소득은 성인자녀가구로 부터의 소득이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이는 공적이전제도가 튼튼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현실적인 차이점에서 야기됨을 지적했다.

2. 사적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세대간 소득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에 대한 연구는 1974년 Becker의 이타주의 모델(Altruism Model)을 시작점으로 지난 20~30년간 미국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문제이다(김희삼, 2007; 성재민, 2006; 정의신, 2008; Altonji *et al.*, 1996/1997; Bernheim *et al.*, 1984, 1985; Brown, 2003; Cox, 1987; Cox *et al.*, 1998; McGarry & Schoeni, 1995; Sloan *et al.*, 2002; White-Means & Hong, 2001). 이들 연구는 주로 세대간 사적이전에 관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의 이전이 유산상속과 같은 미래의 어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주는 교환동기(exchange motive)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모-자식간의 애착관계로 부터 오는 순수한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이타적 동기를 증명함에 있어 경제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제공자(donor)로 부터의 사적이전과 수여자(receiver)의 소득사이의 부정(-)관계를 도출하고 있는데, 즉,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이 이타적 동기의 지배하에 이루어진다면 사적이전을 받는 수여자(예: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제공자(예: 성인자녀)의 이전은 증가한다는 것이다(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전은 줄어드는 관계를 갖는다). 반면 교환동기하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클수록 추후 가능한 보상의 액수가 커짐에 따라 현재의 이전에 참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정적(+)관계가 예측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Berhrman *et al.*(1984)은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이타적이라는 기존가정을 부정하고, 사후 남기게 될 유산상속을 수단으로 성인자녀의 보다 많은 애착과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부모의 전략적 유산상속 모형을 분석에 사용했다.

사적이전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동기의 분석은 새로운 공적이전제도를 정립함에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무엇보다 자녀가 이타적 동기하에서 부모에게 사적이전을 할 경우, 이 제도가 기존의 사적이전을 구축(crowding-out)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타주의 모델의 기본가정은 가족내 개개인의 소비수준이 개별가구의 개인소득보다는, 전체가구의 총 소득에 근거해 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부모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이타적 감정을 가지고 소득이전을 하는 자녀는 부모가 공적이전제도에 의해 개별수입이 늘어나게 되

있을 때 그들의 금전적 이전을 다른 가족원을 위한 소비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적이전제도(국민연금, 사회보장 연금 등)에 의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데, 이 경우 공적이전제도의 원래 취지인 소득분배개선효과에 있어 기대한 만큼의 효율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적이전의 동기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자들간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Brown(2003)의 연구는 이타적 동기 이외에 교환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내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히면서 결국 한가지로 정의된 동기로 사적이전을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Cox *et al.*(1998)는 세대간 사적이전의 동기를 밝혀내고자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capital market imperfection)의 조건하에 생애주기에 따른 상호간 이전의 흐름을 관찰함에 의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모형에서 부모-자녀간 소득이전은 금융시장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부모-자녀간 소득이전은 미래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거나, 현재소득을 미래로 전환하려 함에 있어 이러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소득이 높은 생애주기의 전반부에는 주로 자식의 교육비 투자등과 같이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downstream) 이전이 일어나며, 은퇴 후 소득이 낮은 생애주기의 후반부에는 자녀세대로부터 부모세대로(upstream) 사적이전의 흐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타적동기 하에서는 수여자의 현재소득이 높을수록 이전의 흐름이 줄어들지만, 교환동기하에서는 소득이 높아도 미래에 대한 보상이 크다면 이전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부양에 있어서 전통적 부양규범과 함께 산업화와 핵가족 문화에 따른 개인주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성인자녀들의 사적이전의 결정을 어느 한쪽의 동기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노후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했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부양에 관한 부모-자식간의 사회적 도덕적 규범들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자녀들의 사적이전을 완전한 교환동기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 물론 부모가 재산이 많을수록 유산을 기대하고 보다 더 많은 소득이전을 실행하는 전략적 동기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 등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의 자녀로부터 소득이전에 대한 연

구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재정적으로 풍족한 부모에게 사적이전이 적다는 이타적 동기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의 결정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자산이나 소득의 액수를 통한 명확한 동기의 구분보다는 소득과 자산구성의 효과에 보다 관심을 두고자 한다. 다만, 유산가능성 변인을 추가함에 의해 교환동기가 이전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지 검증해 본다.

3.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의 구조의 불균형과 재정비율의 중요성

자산보유가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소득이 생애주기(life-cycle)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반면, 이들 자산이 개인의 소비수준을 평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남상호, 권순현, 2008). 은퇴 후 소득이 적어진 다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할 때 인적자본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기존 소비 또는 지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aner & Wolff, 2004).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해 고찰한 유우정 외(2006)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비율의 측정도구의 하나로써 유동성지표는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특히 노년가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구성은 부동산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왔는데, 남상호, 권순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에서 순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은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정경희(2007)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3분의 2정도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보유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보고하였다. 이희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주택보유형태별 재무상태의 결과로 전세가계가 자가보유 혹은 월세가계보다 바람직한 재무상태에 있음을 밝혔고, 이는 주택보유로 인한 자산의 유동성 결여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재무설계에 있어서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노년기에 주거의 안정성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실물자산을 유동화시켜 이자소

득을 얻으려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제도하에서는 저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비해 남은 기대여명동안 필요한 생계비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의 자산은 일반 주택시장에서 담보물건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대출 급여액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김안나 외, 2007). 따라서 공적 사적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우리나라 노인계층은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가족내 사적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노인을 부양해야 할 부담, 즉 노인부양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가족내 노인부양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확대와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규범이 약화되면서 자녀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최성재, 김태성, 2002).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노인개별가계는 스스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한 2006년 고령화 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를 이용한다. KLoSA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표본으로 2006년에 1차 표집 및 조사를 실시한 장기추적 생애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자산 현황, 가족내 소득이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중고령 응답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세대간 사적이전에 관한 보다 질 높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미시적 연구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5세 이상의 중고령 가구들 중 어떤 자녀와도 함께 살지 않는 비동거 부모가구들로 제한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45세 이상인

가구로 선별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동거자녀의 경우 이들의 소득이전과 동거결정 사이에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로의 소득이전과 부모와의 동거결정은 동시결정성이 있는 변인들로 소득이전을 하기위해 부모와 동거를 결정했는지, 동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이전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인과성(casualty)이 매우 모호하며 이로 인해 추정이 편의(bias)될 확률이 크다. 또한 부모가 어느 한 자녀와 동거할 경우 다른 자녀의 소득이전 결정에 있어 많은 전략적 경우를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장남이 부모와 동거할 경우 다른자녀는 부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인 이외에 동거자녀의 연령, 소득, 자산, 근로유무, 자녀수 등 여러가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른 자녀의 소득이전결정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복잡성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기 위해 어떤 자녀와도 동거하지 않는 독립적 중고령 가구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둘째, 고령화패널은 가구내 45세 이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연령이 45세 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소득, 자산 영역의 모든 질문에서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했는데, 예를 들어, 임금근로소득의 경우 가장이나 남편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만을 응답하며, 사업체나 농장, 부동산 임대소득 등도 명의를 기준으로 자신의 명의일 때만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재정단위(financial unit)를 고려할 때 부부는 한 단위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은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부모단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고령화 패널의 경우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에 관한 영역은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응답했으며 나머지 배우자에게 그 정보를 붙여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45세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구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부부가구일 경우 배우자 모두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더하여 이들 중 무자녀이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중고령자, 그리고 응답자 자녀 모두가 20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녀 모두가 20세 미만인 경우는 따로 산다고 해도 학업이나 여타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설사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도 아직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단위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고려한 것이 그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고령화 패널에서 실제 조사된 10,254 개 인 응답자들을 가구단위로 통합하여 위의 분석조건에 적격으로 판단되는 총 1,997 가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분석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며, 원자료 통계에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2.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령화 패널(KLoSA)에서 나타난 중고령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인자녀로 부터 이전 받은 사적소득이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더불어 가계 내 자산유동성의 변수가 어떻게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문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1) 먼저 기초분석으로 KLoSA 데이터에서 나타난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의 여부에 따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성분포와 소득원천의 비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t-test 검증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사적이전의 액수가 노후의 소득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의존도를 파악한다.

2)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의 여부와 액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녀로 부터 사적이전여부와 액수를 결정짓는 설명변수들을 분석하며, 특히 부모의 자산유동성 수치에 자녀의 소득이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로짓(Logit)모형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소득이전 액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사적 이전액수는 자녀들에 의해 사적이전이 실행된 가구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한다.

KLoSA 자료는 조사구의 표본추출과정에서 시도별로 또는 주택유형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에 각 층별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가구를 선정함에 따라 표본가구들이 동일한 추출확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보고한다. 이는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구당 소득 및 자산은 영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부양 규범과 같은 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이게 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이 하나의 군집(cluster)을 이루게 되는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표본내의 각 개체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위배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군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표준오차가 너무 작아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과 지역내 상관성을 통제한 방식(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으로 표준오차를 보정하였다.

사적이전에 대한 정의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살아 있는 사람간의 현금 또는 현물이전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로 부터 사적이전이 노령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로써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가구에 사는 성인자녀로 부터 받은 금전적 이전을 사적이전으로 정의하고 분석한다. 고령화 패널의 설문은 금전적 지원에 관해서 현금을 포함하여 청구된 각종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 경우, 예를 들어 의료비, 보험, 학비, 주택구입 할부금이나 전(월)세 등을 모두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 보았으면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을 구분하고 있다. 정기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간격(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등)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정기적인 지원은 명절이나 생신을 제외하고 불규칙적 혹은 예측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병원비, 학비, 불규칙적으로 주는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를 의미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별된 노인가구가 그들이 자녀로 받은 정기적 비정기적 이전소득의 여부에 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총 1,997 가구들 중 어떤 소득이전도 받지 않은 694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303 가구(65.2%)가 지난 한해 자녀로 부터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이전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들 중 14.8%인 416가구는 자녀로 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이전을 받았으며, 정기적 이전이 없었다고 보

<표 1> 자녀로 부터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소득이전여부
(단위: 가구수)

정기적 이전	비정기적 금전이전		전체
	No	Yes	
No	694 (38.1%)	887 (43.4%)	1581 (81.5%)
Yes	182 (8.14%)	234 (10.3%)	416 (18.4%)
전체	876 (46.2%)	1,121 (53.7%)	1,997 (100.00%)

고한 노인가구중에서 43.4%는 자녀로 부터 비정기적 이전을 받았음을 보고했다.

앞서 말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 이전과 비정기적 이전에 관한 분석을 각각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표 1>에서 보여지는 대로 지난 한해 비정기적 이전이 없었다고 응답한 876가구 중 182가구(20.7%)는 규칙적인 사적이전을 받고 있었고, 자녀로 부터의 비정기적 이전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 이들 응답자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으로 이전을 받은 416가구를 제외한 총 1581가구를 대상으로 비정기적 이전의 분석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로서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은 독립가구에 사는 중고령 가구주(혹은 부부)가 그들의 비동거 성인자녀로 부터 1년 동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금전이전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주고받은 액수이다. 즉, 로짓분석을 위해서는 총 자녀 중 최소한 한 자녀이상으로 부터 금전적 소득이전을 받았다면 종속변인으로써의 소득이전을 1로 처리하였고, 어느 자녀에게도 이전을 받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실제액수의 분석을 위한 토빗분석에서는 금전적 이전을 실행한 모든 자녀들로부터 받은 총 액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중고령 응답자 가구의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설명변수의 집합에는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나이 및 나이제곱, 응답자 가구의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총 자녀수 및, 아들수, 총가구원수를 포함시켰다. 응답자가구가 부부인 경우 나이와 교육수준변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두 변인 모두 배우자간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에 따라 한사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부부 중 고령자의 교육수준과 나이를 포함시켰다. 또한 건강관련변수로서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보건의료비가 노후생활에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를 통제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더미변인을 생성함에 있어서 부부가구인 경우는 부부 중 어느 한사람도 조사 당시 가입된 민간의료보험이 없을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지정하였다.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소득에 관한 변인으로는 <표 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적소득이전에 관한 비율이 전체 가구의 80%이상을 차지함을 근거하여, 자녀로 부터의 사적소득이전을 제외하 다른 모든 소득원들을 총합하여 포함시키되, 근로소득의

여부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변수를 더미변수로 도입시켰다. 또한 소속가구가 보유한 일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과, 이 자산 중 가처분 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인 유동성 지수(금융자산액수/순자산액수)가 설명변인에 포함되었다. 즉, 자식으로 부터의 소득이전이 부모의 자산의 유동성결여에서 야기되는 소득부족의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득이전의 결정여부와 그 액수는 유동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고령화 패널에서는 응답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생각했을 때, 나는 1억원 이상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 관하여 ‘그럴 가능성이 없다’를 0점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를 100점으로 주어 유산증여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기대감을 0부터 100사이의 숫자로 응답하게 하고 있다. 교환이론(exchange)에서 설명하듯이, 자녀의 사적이전이 유산상속과 같은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이루어질 경우 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성은 사적이전에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유산상속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예상치가 설명변인으로써 통제된다.

IV. 결과

1. 소득원천과 자산규모에 따른 사적이전

먼저,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이 응답자 가구의 소득과 자산구성의 구체적 항목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사이의 소득과 자산구성 비율의 차이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표 2>는 사적이전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가구의 각 소득원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적 이전을 받는 부모가구의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인 월평균 57만 3천원의 소득을 자녀로 부터 이전받고 있었으며, 이는 총소득의 거의 50%를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 여부는 응답자 가구의 소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정기적 이전의 유무에 따른 두 집단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두 집단간 34.1% 대 80.6%로 이전을 받는 집단의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

〈표 2〉 사적이전의 유무에 따른 각 소득원천 비중

(단위: 만원)

소득원	정기적 이전		비정기적 금전이전		전체 (n=1,997)
	Yes (n=416)	No (n=979)	Yes (n=887)	No (n=694)	
근로소득	39.1*** (34.1%)	106.5 (80.6%)	97.1** (75.5%)	117.3 (85.8%)	94.1 (72.5%)
연금소득	6.3** (5.4%)	9.5 (7.2%)	11.1 (8.6%)	7.7 (5.7%)	8.9 (6.8%)
사회보장 소득	1.7*** (1.5%)	3.8 (2.8%)	4.3 (3.3%)	3.1 (2.3%)	3.4 (2.6%)
금융소득	7.5 (6.5%)	5.3 (4.0%)	3.5 (2.7%)	7.3 (5.3%)	5.7 (4.4%)
부동산소득	2.9 (2.5%)	0.8 (0.6%)	0.8 (0.6%)	0.8 (0.6%)	1.2 (0.9%)
사적이전 소득	57.3*** (49.5%)	6.3 (4.7%)	11.8*** (9.2%)	0 (0.0%)	16.5 (12.7%)
총소득	114.7*** (100.0%)	132.1 (100.0%)	128.6 (100.0%)	136.17 (100.0%)	129.7 (10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비율과 액수는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3) 정기적 이전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의 사적이전 소득에 관한 추정치는 지난해 비정기적 이전에 관한 보고를 월평균하여 계산했음.

을 합친 비율(34.1%+49.5%=83.6%)은 정기적 이전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 총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접하다. 이는 정기적 이전을 받지 않는 집단의 근로소득의 부족 부분을 자녀로 부터의 이전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정기적 이전의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 부모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은 월평균 11만8천원으로 그 액수에 있어서 정기적 사적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 또한 정기적 이전에 관한 두 집단 차이에 비하여 근소했다.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녀로 부터 월평균 16만 5천원을 이전받고 있었으며 이 액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7%로 여전히 근로소득을 제외한 항목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동산 및 금융소득과 관련한 자산소득은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소득에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소득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가구집단에서 그렇지 못한 가구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정기적으로 이전을 받은 집단의 자산구성에서 의외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표 3>참조).

다음으로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에 따른 자산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가

〈표 3〉 사적이전의 유무에 따른 항목별 자산비율

(단위: 만원)

설명변인	정기적 이전		비정기적 이전		전체 (n=1,997)
	Yes (n=416)	No (n=979)	Yes (n=887)	No (n=694)	
부동산자산	13,972.9** (94.5%)	11,078.9 (84.6%)	11,614.6 (90.9%)	10,468.6 (88.6%)	11,613.0 (90.9%)
금융자산	702.4** (4.7%)	1,014.3 (9.0%)	978.7 (7.7%)	1,055.0 (8.9%)	956.8 (7.5%)
기타자산	99.8*** (0.67%)	224.5 (1.8%)	161.9*** (1.3%)	295.9 (2.5%)	201.5 (1.6%)
부채	501.5 (3.3%)	762.0 (6.2%)	781.2 (6.1%)	740.0 (6.3%)	713.9 (5.6%)
총자산	14,775.2 (100.0%)	12,317.8 (100.0%)	12,755.2 (100.0%)	11,819.6 (100.0%)	12,771.3 (100.0%)
순자산 (총자산-부채)	14,273.7* (100.0%)	11,555.8 (100.0%)	11,973.9 (100.0%)	11,079 (100.0%)	12,057.4 (10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비율과 액수는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구가 보유한 일체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액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은 평균 1억 2771만 3천원이었으며 이중 총부채 713만 9천원을 차감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net asset)은 1억 2057만 4천원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중고령 가구의 총자산중 약 91%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적이전의 여부와 연계하여 집단별 자산구성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사적이전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받지 않은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던 사실과는 정반대로, 자산에 있어서는 이전을 받는 가구들의 순자산이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정기적 이전의 여부에 따른 두 집단사이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경우 이전을 받은 가구에서 훨씬 더 높은 자산액수를 보고했으며 그 비율 또한 높았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전을 받은 가구는 순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4.5%로 이는 전체 응답자 가구의 비율인 90.9%보다 높고 정기적 이전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84.6%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 자산유동성의 측정치에 사용되는 항목인 금융자산이 정기적 소득이전을 받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정기적 이전 여부에 따른 집단사이에서의 자산비율구성의 차이는 정기적 이전여부에 따른 집단사이에서 보여지는 특성들과 대체적인 흐름은 같았지만, 기타자산을 제외한 전반적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는 미미했다.

2. 사적이전의 결정요인

소득이전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앞서 <표 4>는 사적이전소득의 여부에 따른 응답자 가구의 기초 비교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5.1세 이었으며, 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과 비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의 평균연령은 각각 68.8세와 66.7세로 비교집단보다 대략 5세 정도 높았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 20.2%, 중졸이하 16.4%, 그리고 대졸 이상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의 67.8%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부부가구였으며, 정기적 이전을 받는 집단에서 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57%).

전체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은 대도시거주의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비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은 읍면부 거주의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다. 전체응답자의 총 자녀수는 평균 3.2명이었으며 이중 평균 1.7명의 아들이 존재함이 보고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자의 37.4%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고하였고, 28.9%는 민간의료보험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과, 민간의료보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표 4> 사적이전소득의 여부에 따른 응답자 가구의 기초통계

설명변인	(1) 정기적 이전		(2) 비정기적 이전		전체 (n=1,997)
	Yes (n=416)	No (n=979)	Yes (n=887)	No (n=694)	
	18.4%	81.5%	56.5%	43.4%	100%
사회인구학적 변수					
나이	68.8	64.3	66.7	61.5	65.1
건강관련변수					
건강상태(%)					
0.보통이상	71.4	60.6	63.3	57.5	62.5
1.나쁨	28.6	39.4	36.7	42.5	37.4
민간의료보험(%)					
0.1개이상	75.0	70.2	72.8	67.3	71.0
1.없음	25.0	29.8	27.2	32.7	28.9
재무관련변수					
유산증여가능성(%)	29.9	30.1	27.2	33.3	30.1
월평균소득(만원)	57.4	125.8	116.7	136.1	113.2
근로소득 유(%)	58.3	76.7	77.0	76.5	73.3
순재산(만원)	14,273.7	11,555.8	11,973.9	11,079.5	12,057.4
유동성지수	0.063	0.074	0.074	0.073	0.072

주: 비율과 액수는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했음.

사적이전을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의 유산을 증여할 가능성을 평균 30%정도로 예상했으며 이 항목에 있어서는 집단간 큰 평균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산의 유동성지수는 전체 평균 0.072로 이는 1억원의 총자산이 있을 경우 단지 720만원을 금융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노인가구의 자산유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을 암시한다. 특히 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의 경우 이들의 평균나이가 은퇴시기를 훨씬 넘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여전히 실물자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유동성은 이전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0.01정도 더 낮았다.

다음으로 <표 5>는 자녀의 사적이전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1) 정기적 이전과 (2) 비정기적 이전에 관한 모형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들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결혼상태와 유산상속가능성등 몇몇 유의미한 변수들은 추정계수의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 모델 사

<표 5> 정기적 비정기적 사적이전에 따른 Logit 모형

종속변수	(1) 정기적 이전		(2) 비정기적 이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변수				
나이	0.332***	0.100	0.450***	0.076
나이제곱	-0.002***	0.001	-0.003***	0.001
교육수준(비교대상: 대졸이상)				
대졸이상	0.404	0.269	-0.037	0.251
중졸	0.339	0.317	-0.100	0.268
고졸	0.345	0.285	-0.193	0.251
배우자 있음	-0.334**	0.164	0.286*	0.171
지역(비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0.022	0.149	0.217	0.161
읍면부	-0.611***	0.182	0.473***	0.170
총자녀수	0.060	0.051	0.293***	0.057
아들수	0.149	0.069	0.002	0.073
가구원수	-0.097	0.109	-0.230***	0.089
건강관련변수				
건강상태 나쁨	-0.058	0.159	0.165	0.147
민간의료보험없음	0.496***	0.172	0.480***	0.159
재무관련변수				
유산상속가능성	0.003	0.002	-0.008***	0.002
월평균소득	-0.002	1.498	0.000	0.340
근로소득 유	-0.504***	0.178	-0.005	0.155
순재산/1000	0.005**	0.002	0.009***	0.003
유동성지수	0.550	0.400	0.497	0.412
절편	-14.228***	3.496	-17.019***	2.607
응답자 가구수		1,997		1,581
Pseudo R ²		0.0993		0.1284
Log likelihood		-860.12		-952.27

주: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p<.05, **p<.01, ***p<.001

이에서 반대부호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예측한대로 자녀가 정기적 비정기적 이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기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우선 연령과 연령의 제곱 모두는 자녀로부터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사적이전의 실행여부에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수준의 모든 범주에서 추정계수의 부호가 정기적 이전과 양의 상관관계를, 비정기적 이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정기적 이전의 경우 대졸이상의 부모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은 부모집단이 자녀로부터 소득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높지만, 비정기적 이전의 경우는 그 반대로 학력이 높은 대졸이상의 집단에 속한 부모가 이전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의 유무와 지역에 따라서도 두 모델간 반대결과를 보여주었다. 응답자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로부터 정기적 이전의 확률은 줄어드는 반면, 비정기적 이전에 있어서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사별이나 이혼에 의해 한쪽 부모가 혼자 사는 경우 자녀는 정기적 이전을 하려는 성향이 크며, 양쪽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정기적 이전보다는 경조사, 또는 일시적으로 부모가 금전적 필요가 있을 때 불규칙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정기적 이전을 받은 집단에서 이혼이나 사별의 결혼상태에 있는 응답자중 91%가 여성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상당히 적었던 중고령 세대를 감안할 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립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의 정기적 금전이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대도시에 사는 부모집단이 읍면부에 사는 부모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정기적 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이들은 비정기적 이전을 받을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분석대상의 근로소득을 지역별로 평균해 보았을 때,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가구의 경우 월평균 근로 소득이 53만 7천원, 중소도시 거주 가구는 83만 2천원, 그리고 읍면부 거주가구는 108만 3천원의 순으로 대도시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도시에 사는 응답자가구에 비해 농/어촌 등 시골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은퇴연령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업종에 종사함에 의해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대도시 노인들의 경우 관련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총 자녀수와 아들의 수는 정기적 이전에 있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찾아지지 않았지만, 비정기적 이전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이전결정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관련 변수에 있어서는 부모가구가 가입된 민간의료보험이 없었을 때 정기적 비정기적 이전 모두의 영역에서 자녀로부터 소득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산상속가능성의 정도는 자녀의 정기적이전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비정기적 이전에 있어서는 유산상속가능성의 척도와 이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유산상속가능성이 부모의 자산상태를 반영한다고 간주할때 이는 우리나라 성인 자녀들은 사적이전을 결정함에 있어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교환동기(exchange motive)가 주된 이전 동기가 아니라는 점이 보여진다.

중고령자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두 가지 이전 모두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지만, 근로소득의 여부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은 정기적이전과 상당히 높은 부적관계를 보였는데, 월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로부터 정기적 소득이전을 받을 확률은 낮았다. 이는 이전의 여부뿐 아니라 뒤에 설명할 실제 이전 액수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변수는 비정기적 소득이전에 관해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어서 응답자의 순 재산은 자식이 소득이전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 이전과 비정기적이전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앞서 고찰했던 <표 3>에서 밝혀진 자산구성의 비율과 연계시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즉, 이전을 받는 그룹의 자산액수는 이전을 받지 않는 그룹보다 높았지만, 전체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고, 금융자산의 비율은 더 낮음에 따라 이러한 저유동적 자산구조에서 금융자산으로 부터 오는 이자소득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연금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안정적 수입이 부족한 노인가구의 경우는 소득의 부족분을 자녀들의 이전소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초통계치에서 보여지듯이, 로짓모형에서 또한 유동성지수는 자녀들의 이전소득 결정에 대한 설명변수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대부분의 노인가구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9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보유한 금융자산의 액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자녀소득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 그 분포가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가구의 절반이상인 1,048 가구(53.5%)은 금융자산에서 0 을 보고하였으며, 82.7%가 0.1이하의 유동성지수에 머무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순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 평균 0.2 정도의 임계치가 적정선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했을 때 중고령 대부분의 가구의 자산구성은 근로소득의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차이의 불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유동성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부모의 자산구성이 은퇴 후 연령의 시점에서 현재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낮은 소득은 자녀들로 하여금 정기적 이전을 결정하게 되는데, 즉 자녀들은 총자산을 고려한 잠재적 소득 보다는 현재의 낮은 소득에 반응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표 6>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제 소득이전액수에 관한 Tobit 추정 결과는 정기적 이전액수에 있어서는 앞의 Logit 모형 추정결과와 상당히 합치되고 있는 반면, 비정기적이전의 액수의 추정에 있어서는 연령과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자녀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이전되는 액수는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통계적 의미와는 달리, 추정계수에서 보여지는 증가의 액수는 경제적 의미에서 별달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표 6>의 결과에 관해서는 정기적 이전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응답자의 연령과 연령제곱항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사적이전액은 81세에 그 이전액수가 극대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자녀로 부터 소득이전이 월평균 약 23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역시 가장 큰 효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구는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부모가구에 비하여 약 41만원 정도를 더 이전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모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자녀로 부터의 수급액이 31만원 정도 더 적은 사적이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모형에서는 유동성변인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유동성지수에 100 을 곱한 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증가한 액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결과로써 로짓모형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추

<표 6> 정기적 비정기적 사적소득이전 액수에 대한 Tobit 모형

종속변수	(1) 정기적 이전액		(2) 비정기적 이전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변수				
나이	19.690***	5.945	9.709*	4.974
나이제곱	-0.121***	0.041	-0.065*	0.033
교육수준(비교대상: 대졸이상)				
초졸이하	21.857	19.031	-16.809	14.761
중졸	20.214	21.371	-18.053	15.460
고졸	18.198	19.149	-19.776	16.087
배우자 있음	-10.533	10.503	4.988	3.528
지역(비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3.683	9.254	7.321	5.338
읍면부	-31.551***	11.693	6.049	4.213
총자녀수	4.336	3.594	3.462***	0.746
아들수	7.630	4.680	1.951	1.647
가구원수	-3.146	7.357	-4.473	2.770
건강관련변수				
건강상태 나쁨	1.071	10.906	6.839	4.455
민간의료보험없음	23.187**	10.679	13.266	8.082
재무관련변수				
유산상속가능성	0.280*	0.144	-0.071	0.056
월평균소득	-0.084	0.058	-0.049	0.008
근로소득 유	-40.828***	11.122	1.029	2.721
순재산/1000	0.330**	0.158	0.052	0.049
유동성지수*100	0.655**	0.296	-0.009	0.070
절편	-890.511	214.778	-365.766**	179.155
Pseudo R ²	0.0295		0.0169	
left-censored observations ¹⁾	1,581		694	
uncensored observations ²⁾	416		887	

주: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유동성 지수는 x100 을 하여 자산유동성 1% 증가시 변화된 액수를 파악하도록 하였음. *p<.05, **p<.01, ***p<.001

1) 정기적 비정기적 이전<=0, 2) 정기적 비정기적 이전 >0.

정계수는 예상과 달리 정적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액수의 증가분은 경제적 의미에서 상당히 미미했으며 응답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비율이 10% 늘어났을 때 이전액은 약 6천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원인에 대한 해석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 세밀한 원인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중고령 가구의 소득 및 자산구성에 따른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을 비교 분석했고, 정기적 비정기적 사적이전의 실태와 그 결정요

인을 고찰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적 이전은 그 액수와 비중에 있어서 비정기적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며, 특히 부모가구의 노후생계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로 부터의 사적이전을 받는 응답자의 가구의 총소득은 이전을 받지 않는 가구들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항목별 소득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특히 정기적 소득이전을 받는 집단의 근로소득은 이전을 받지 않는 집단의 근로소득의 절반에 못 미쳤는데, 소득구성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이 부족분은 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비정기적 이전에 있어서의 집단간 소득차이는 정기적 이전에 따른 집단간 차이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가구는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을 유동화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기적 이전을 받는 집단의 경우 평균연령이 약 69세로 은퇴연령을 상당히 지난 시점으로 이들의 소득의 액수, 특히 근로소득의 액수는 이전을 받지 않는 집단의 액수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동성은 더 낮았다. 그러나 자산유동성 변인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의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로 찾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자산구조가 공통되게 실물자산(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집단간 유동성의 차이가 이전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생활비로 이용될수 없고, 이러한 불균형적 구조 자체는 자녀들의 사적이전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우리나라 성인자녀들의 사적이전은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교환동기(exchange motive)라기 보다는 부모의 생계를 보전해 주려는 이타적 동기가 주된 이전 동기인 것으로 보여진다. 증거로써 유산상속변인은 정기적 이전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찾아지지 못했으며, 비정기적 이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앞서 말한대로 공적이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주는 사실이다. 즉, 이타적 동기하에서 공적이전제도는 사적이전을 구축(crowd-out)한다는 전통적 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고령 가구가 공적이전제도에 의해 부가적인 수입을 갖는다 해도, 이로 인해 증가된 소득분 만큼 자녀로 부터 받는 사적이전의 수입이 줄어들

게 된다면 가족에서 국가로 비용 주체가 바뀔 뿐 여전히 노후 빈곤률은 높고, 노후소득보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연금의 취지는 기대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넷째, 그밖에 유의미한 결과로써 사별이나 이혼에 의해 배우자가 없는 부모, 그리고 읍면부에 사는 부모에 비해 대도시에 사는 부모가 자녀로 부터 정기적 사적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비정기적 이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부모, 읍면부에 사는 부모, 그리고 자녀수가 많은 부모가 보다 더 이전을 받는 것으로 보여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더불어 노후소득을 안정화하고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론에서 밝혀진 중고령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구성의 특징과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에 관한 분석의 결과에 근거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중고령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생활비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과의 일치율이 높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퇴직시점이 가까운 근로자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장기저축상품의 도입 등 은퇴이후의 시기에 고령인구가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가처분 소득의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방안으로써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장치 마련과 특히 저가 주택을 소유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이 가계의 위험기피적 성향을 크게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불안정한 주택시장은 고령가구의 자산유동화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은 개별가구의 건전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울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소득보장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

할이 커진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액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실물자산의 처분률이 낮고, 이 자산이 사후 그들의 자녀에게 남겨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의 공적부조액은 현재 소득의 부족에 처해있는 노인의 복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자녀세대의 후생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가계는 개인금융자산 규모 및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 스스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진단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자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령가구, 사적이전, 유동성

참 고 문 헌

김근용, 강미나. (2009). 고령화에 대응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233, 1-8.

김안나, 정경희, 최성은, 최은희, 전지현. (2007). 저소득층 자산활용 노후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44.

김희삼. (2007). 사적이전과 노인소득보장.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09-560.

남상호, 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박덕배. (2005). **베이비붐 세대(1955-63), 노후대책 막막하다**.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 (2009). **고령자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 **한국 노인의 소득 및 재산보유실태**. 서울: 보건복지부.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3, 75-83.

신동진. (200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조성방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연구**, 7.

유우정, 배미경, 권상장. (2006, 2).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 (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한국소비문화학회**, 7(3), 59-84.

정의신. (2008). 사적이전과 계층에 관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97-716.

정경희. (2007).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6호, 6-14.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24(2), 1-41.

통계청. (2005).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Altonji, J. G., Hayashi F., & Kotlikoff, L. J. (1996). *The Effect of Income and Wealth on Time and Money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orking Paper no. 5522). Cambridge, Massachuset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etrieved Feb 22, 2010, from <http://www.nber.org/papers/w5522.pdf>

Bernheim, B., Douglas, A. S., & Summers, L. H. (1984). *Bequests as a Means of Payment* (Working Paper no.1303). Cambridge, Massachuset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etrieved Jan 18, 2010, from <http://www.nber.org/papers/w1303.pdf>

Bernheim, B. Douglas, A. S., &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Brown, M. (2003). *Social Security Reform and the Exchange of Bequests for Elder Care* (Working Paper no. 2003-12). Chestnut Hill, Massachusetts: Th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Retrieved Feb 22, 2010, from http://crr.bc.edu/images/stories/Working_Papers/wp_2003-12.pdf

Caner, A., & Wolff, E. N. (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4), 493-518.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Cox, D., Eser, Z., & Jimenez, E. (1998). Motives for private over the life cycl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vidence for Peru.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5(1), 57-80.

McGarry, K., & Schoeni, R. F. (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S184-S226.

Sloan, F. A., Zhang, H. H., & Wang, J. (2002). Upstream

intergenerational transfer. *Southern Economic Journal*, 69(2), 363-80.

White-Means, S. I., & Hong, G. S. (2001). Giving incentives of adult children who care for disabled par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364-389.

접 수 일 : 2010. 03. 03.
수정완료일 : 2010. 03. 29.
게재확정일 : 2010. 04. 02.